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009

발의연월일: 2023. 6. 30.

발 의 자:김용민·김정호·이동주

임오경 · 서동용 · 최혜영

강민정 · 최강욱 · 김의겸

윤준병 · 황운하 · 조오섭

이수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사태 선포,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체감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 기관의 서비스축소 및 폐쇄 등으로 인한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의 돌봄 공백이었음에도, 현행법에는 이러한 돌봄 공백을 관리하기 위한 대응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재난 발생 시 국가 차원에서 돌봄 공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체계를 구축·운영하도록 하고, 시·도에서는 긴급돌봄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며,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7조의2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장에 제3절(제57조의2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절 긴급돌봄

- 제57조의2(긴급돌봄체계의 구축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의 돌봄 공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돌봄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긴급돌봄체계에 따른 긴급돌봄의 대상, 범위, 방법 및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긴급돌봄체계가 지역 차원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내 긴급돌봄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 - ④ 정부는 긴급돌봄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절 긴급돌봄
<u><신 설></u>	제57조의2(긴급돌봄체계의 구축)
	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
	발생으로 인한 아동・노인・장
	애인 등의 돌봄 공백에 체계적
	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돌
	봄체계를 구축・운영하여야 한
	<u>다.</u>
	② 제1항의 긴급돌봄체계에 따
	른 긴급돌봄의 대상, 범위, 방
	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
	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	③ 시・도지사는 제1항의 긴급
	돌봄체계가 지역 차원에서 원
	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구
	역 내 긴급돌봄전담기관을 지
	<u>정할 수 있다.</u>
	④ 정부는 긴급돌봄체계의 안
	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
	치단체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
	을 하여야 한다.